

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, 이동식 놀이교실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농촌여성정책팀	팀 장 오미란	044-201-1565
		사무관 김성경	044-201-1566
		주무관 정광호	044-201-1567

I

사업개요

1. 사업목적

-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,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

2. 주요내용

-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,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
- 이동식 놀이교실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·도서대여 등

3. 근거법령
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
- 「여성농어업인육성법」 제11조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
-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2조

4. 재원구성 : 국비 50%, 지방비 50%*

*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%, 지방비 40%

5. 추진경과

- ('12)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사업 업무조정(복지부→농식품부)
- ('13)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도입(사업명칭 변경)
- ('17)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
- ('20)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

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

1. 사업대상자

-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·시장·군수 및 위탁운영자, 사회복지법인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1)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지원받으려는 경우

- (지역)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 -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당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만 지원
- (규모) 영유아 현원이 3~20인 이하인 시설
 - 단,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(폐원 포함)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·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가능
 - ※ ('22년부터) 전년도 1~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~20명인 시설
- (심의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1조에 따른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”를 제출한 시설(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)
 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 상 신청·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, 제출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
- (운영)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
 -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 「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」에 따름
 -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준용
 -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,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~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
 - ※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[붙임 1, 2] 참고

2)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경우

- (지역) 어린이집(국공립·민간 포함)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 - 단,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,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 -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당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만 지원
 - (심의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,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”를 제출한 도 및 시·군
 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 상 신청·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, 제출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
 - (운영)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
 -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 「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」에 따름
 -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준용
 -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
- ※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[붙임 1, 2] 참고

3.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, 사용용도

-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15,200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*
 - *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%, 지방비 40%
 - 마을회관·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, 보육교사 숙박 시설 신축비,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,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
 -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%까지 추가지원 가능
 - (운영비) 개소당 최대 1,370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*
 - *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%, 지방비 40%
 -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, 보육교사 교통비, 교재·교구 구입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
- ※ 지원한도기준 및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[붙임 3, 4] 참고

2 이동식 놀이교실

1. 사업대상자

-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·도서 등을 대여하고,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위탁운영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(지역)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(국공립·민간 포함)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*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
- (운영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운영

3.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, 사용용도

- (운영비) 개소당 최대 15,200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*
*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인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%, 지방비 40%
- 인건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, 차량 임차료,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
- ※ 예산은 자유롭게 구성하되,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60% 이내로 제한 ('22년부터 적용)
- 지역여건에 따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%까지 추가지원 가능

< 운영방법 >

-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
- 거점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 방문
-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·활용

< 운영내용 >

- 놀이감 및 도서 대여
-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
-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
[업무 흐름]	[시기]	[주요 내용]
① 수요조사	전년도 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요조사 계획 시도 통보(농식품부) ▶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시도)
② 신청·접수	전년도 10~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청·접수계획 통보(농식품부) ▶ 접수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시도) <p>*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함께 제출</p>
③ 대상자 선정	전년도 11~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대상자 선정(농식품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,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,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
④ 시행지침 통보	1월	▶ 사업시행지침 통보(농식품부)
⑤ 사업추진	연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금교부 및 집행(농식품부→시도→시군→어린이집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비는 시설 설치상황에 따라 집행 - 장비 및 기자재, 차량은 시설 설치 완료 후 구입 -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월부터 집행 - 운영비는 매달 23일~말일까지 신청(어린이집 등) 하고, 다음달 7일까지 집행(시군)을 원칙으로 함
⑥ 이행점검	연중 (분기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(시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 설치현황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 -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은 시도에 보고 ▶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·추진 지도(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시군이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도
⑦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·반납	다음연도 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(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음 연도 1월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-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
⑧ 사후관리	설치 후 5~10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후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설치 및 리모델링 완료 후 시설은 10년,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5년

1. 수요조사

가. 수요조사 계획 통보(농식품부) * 전년도 3~4월

-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

나.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(시도, 시군) * 전년도 3~4월

- 시도는 시군에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하고,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
 - 시도와 시군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수요조사 계획을 공지하고, 관련 기관에 홍보
- 시도는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

2. 신청접수

가. 신청접수 계획 통보(농식품부) * 전년도 10~11월

-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

나.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(시도, 시군, 어린이집 등) * 전년도 10~11월

- 시도는 시군에,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
-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은 [별지 제1~3호 서식]에 따라 시군에 신청
-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
 -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와 함께 “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”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시도에 제출

3.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 내시

가. 사업대상자 선정(농식품부) * 전년도 11~12월

- 농식품부는 사업신청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
 - 영유아·보육시설 현황 등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, 현장점검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·선정

나. 예산내시 및 확보(농식품부) * 전년도 11~12월

-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별로 내시
- 시도와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등 준비 절차

4. 사업추진 및 이행점검 등

가. 사업시행지침 통보(농식품부) * 1월

-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

나. 자금배정(농식품부, 시도, 시군) * 연중

-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, 농식품부는 시도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

다. 자금집행(시도, 시군, 사업대상자) * 연중

- 시도, 시군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집행
 - 사업대상자는 자금을 지출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, [별지 제4호 서식]에 따라 지출사항을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·관리하여야 함

라. 이행점검(시도, 시군) * 연중

- 시도는 시설설치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[별지 제5호 서식]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
- 시군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시도에 보고, 시도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·점검

마. 사업계획 변경(시도, 시군) * 연중

- 시도와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변경
 - 다만,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보고
 - ①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%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: 시장·군수 승인
 - ②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% 이상 50%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: 시·도지사 승인
 - ③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% 이상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: 농식품부 장관 승인

바.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·반납(시도, 시군) * 다음연도 1월

- 시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
- 농식품부는 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확인 후 시도에 교부확정 통보
-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(집행잔액, 이자액)을 반납하고, 즉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

5. 사후관리

가.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

중요재산의 범위	사후관리 기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동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보조금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- 보조금으로 리모델링한 건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보조금액(국비, 지방비 합산액)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(부기등기 불필요) 	10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타재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자재 및 장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취득가액 중 보조금액(국비, 지방비 합산액)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	5년

나. 중요재산의 보고 및 등록(농식품부, 시도, 시군) * 연중

- 어린이집 등은 중요재산을 취득한 즉시 [붙임 6호 서식]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시군 및 시도에 보고하고 e나라도움에 등록
- 시도는 어린이집 등이 중요재산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[붙임 6호 서식]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하고 e나라도움 등록여부 확인
-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공시

다. 중요재산의 처분제한

-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①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, 교환, 대여, ③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
-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① 중요재산 취득에 소요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거나 ② 농식품부와 협의

라. 사후관리(농식품부, 시도, 시군) * 연중

- 시도와 시군은 어린이집 등이 중요재산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
-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속

6. 제재 및 준용

-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법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따름

사업명	현행(2020)	변경(2021)	변경사유
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	<p><지원자격 및 요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유아 현원이 3~20인 이하인 시설 	<p><지원자격 및 요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전년도 1~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~20명인 시설</u> ※ '22년 대상자 선정부터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접수 기간과 운영기간 차이에 따른 자격요건 수시 변동 문제 보완
	<p><지원자격 및 요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 	<p><지원자격 및 요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 - <u>신청접수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, 제출 전까지 보조금 집행 제한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접수 기간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기간이 상이한 문제 보완
	<p><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도서·벽지지역에 한해</u> 만2세 아동과 유아의 혼합반 허용 ○ <u>도서·벽지지역 중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</u> 전연령 혼합반 허용 ○ <u>해당 읍면에 다른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</u> <u>도서·벽지지역에 준하여 혼합반 허용</u> 	<p><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</u> 만2세 아동과 유아의 혼합반 허용 ○ <u>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</u> 전연령 혼합반 허용 <p><삭제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을 감안하여 혼합반 운영기준 완화
	<p><운영비 집행지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냉난방비 	<p><운영비 집행지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제세공과금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행가능 항목 확대
	<p><운영비 집행지침></p> <p><신설></p>	<p><운영비 집행지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자기개발비, 영수증 등 증빙없이 지급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출서류 명확화
	<p><운영비 집행지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비,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 	<p><운영비 집행지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당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집행 유연성 부여

사업명	현행(2020)	변경(2021)	변경사유
이동식 놀이교실	<지원한도액> <신설>	<지원한도액> ○ <u>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60% 이내로 제한</u> ※ '22년부터 적용	○ 인건비 편성기준 명확화
공통	<사후관리> <신설>	<사후관리> ○ <u>중요재산의 범위</u> ○ <u>중요재산의 보고 및 등록</u> ○ <u>중요재산의 처분제한</u> ○ <u>사후관리</u>	○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 반영

- 시설의 설치 :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5조, 제15조의2,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[별표1]의 “어린이집의 설치기준”에 따름.
- 시설규모 : 상시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
- 설치지역 : 보육시설(국·공립, 민간)이 없는 농촌 읍·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- 설치기준 :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,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

□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운영

- 명칭 : 「○○○ 어린이집」 이라 함.
- 보육대상 : 만 0세~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.
- 보육시간 :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- 다만,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(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)
 - * 월~금요일 : 12시간(07:30~19:30), 토요일 : 8시간(07:30~15:30)
- 위탁운영 : 시장·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·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“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”을 준용함.
-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기준
 - 지역내 수급상황, 학부모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(0~2세) 혼합반 구성과 가정 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 아동과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. 단, 교사 대 아동비율은 최저연령 기준에 따름
 -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,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

- **보육교직원** : 센터장(원장) 및 보육교사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[별표1]에서 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. * [붙임 3] 참고
 - 센터장은 조직·인사·급여·회계·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함.
 - 센터장은 보육정원이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,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별표 2)
 - 보육교직원(원장, 보육교사, 취사부)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‘보육사업안내 기준’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

□ 분원의 설치 및 운영

- **정의** :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책임을 지는 시설
- **기준** : 영유아가 3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분원을 설치·운영 가능
- **명칭** : 「○○○ 어린이집 △△분원」 이라 함.
- **위탁운영** : 분원 형태로 지정한 경우,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**보육교직원** :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,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운영을 지원하는 ‘분원운영지원교사’로 지정할 수 있음
 - ‘분원운영지원교사’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
 -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
 -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
- **기타** : 기타 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과 동일

< 분원 운영에 대한 책임 및 업무 >

◇ 본원원장의 책임

-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, 취사부 및 보육보조 인력의 임명
-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및 예·결산 회계

◇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업무

- ‘분원운영지원교사’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, 다음 업무를 수행
 - 일과운영 계획 • 보육실 환경 구성 • 조리실 관리
 - 교재교구 선정 • 부모상담 • 급간식 식단 운영
 -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

※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‘보육사업안내’를 따름

1.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

가. 일반기준

- 1)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2)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(유치원 과정을 말한다)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
- 4)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(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)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6)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7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~ 마. (생략)

바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
2.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

등 급	자 격 기 준
보육교사 1급	가.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.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
보육교사 2급	가.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.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
보육교사 3급	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
붙임 3

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□ 시설비

- 3~15인 이하 보육시설 : 최대 15,200만원
 - 리모델링·신축비 : 9,000만원 내외(64.35㎡내외 지원, 1,397,000원/㎡ 적용)
 -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: 2,000만원 내외(33㎡내외 지원, 606,060원/㎡ 적용)
 - 기자재·장비구입 : 2,000만원 내외
 - 차량구입 : 2,200만원 내외/1대(15인승 이하 승합차)
- 16~20인 이하 보육시설 : 15,200만원 + 30% 추가지원 가능
 - 리모델링·신축비 : 12,000만원 내외(85.8㎡내외 지원, 1,397,000원/㎡ 적용)
 -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: 2,000만원 내외(33㎡내외 지원, 606,060원/㎡ 적용)
 - 기자재·장비구입 : 3,600만원 내외
 - 차량구입 : 2,200만원 내외/1대(15인승 이하 승합차)

<시설비 공통사항>

- *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* 시군은 보육 영유아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비가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에 지출되는 지 확인 후 집행
- * 기자재 구입비를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로 변경하는 등 항목을 변경하여 집행 불가
 - 단, 차량구입비는 다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 2,500만원까지 집행 가능

□ 운영비 : 최대 1,370만원

-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: 480만원(4명×10만원×12개월)
- 보육교사 교통비 : 360만원(3명×10만원×12개월)
- 교재·교구비 : 200만원(상·하반기 연2회 × 100만원)
-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: 210만원 내외
- 제세공과금 : 120만원 내외

붙임 4

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집행지침

구분	집행지침	입금계좌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비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 기한 내에 시군에 신청 ○ 교재·교구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제세공과금은 사용명세서 작성대장 비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이돌봄센터와 시군에 각 1부씩 5년 동안 보관 ○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매달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집행. 단, 12월분은 12월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○ 교재·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는 증빙할 수 있는 지출서류(영수증, 카드사용명세서 등)를 첨부하여 신청 시 검토 후 집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출 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○ 교재·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의 경우, 전체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 여건에 따라 항목 구분 없이 운용 가능 	입금계좌
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영수증 등 증빙없이) 실제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 시 월 10만원 정액 지급 ○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, 보육교사, 취사부, 원장 순으로 지원 	개인별 계좌
보육교직원 교통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제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 시 월 10만원 정액 지급 ○ 시설당 배정금액 범위* 내에서 지원하되, 보육교사에게만 지원(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) * 보육교사가 1인인 경우 120만원, 2인 240, 3인이상 360 	
교재·교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·교구를 구입 ○ 교재·교구비 구입은 신청 월 현원 기준으로 신청 	어린이집 별도 계좌
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한번 또는 2~3회에 나눠서 신청 가능) - 외부강사 수당 및 부대비용,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등 	
제세공과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수증 첨부, 은행이체 통장사본, 카드사용 내역서 등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- 센터 여건에 따라 연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	

□ 운영방법

-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운영 가능
-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단체 보육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 방문
-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함
-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·활용

□ 운영내용

- 놀이감 및 도서 대여
-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
-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
□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

- 보육전문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
- 놀이교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
- 보육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며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 상담 가능

□ 기타

- 급여는 전담교사, 운전기사, 운영요원(보조) 등 운용인력에게 월단위로 지급
-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다중언어 놀잇감이나 도서를 구비하여 활용하여야 함
- 놀이감등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유지·보수 하여야 함
- 놀이교실 운행 및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
- 놀이차량 운영 책임자는 놀이교실 이용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
- 놀이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, 응급상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, 놀이차량 종사자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
- 놀이차량에는 일일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함
- 사업 다음연도에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취약한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 및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이관·활용도 가능

■ [별지 제1호 서식]

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청서(신규 신청 시설용)

1. 일반현황

□ 신청시설

시설명		대표자(원장)	
소재지		연락처	
유형 (√체크)	시설유형 : 국공립 <input type="checkbox"/> ,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/ 직접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 , 위탁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		
	신청유형 : 시설비 <input type="checkbox"/> (금액: 원) / 운영비 <input type="checkbox"/> (금액: 원)		

□ 운영현황

○ 영유아 현황

기준시점	영유아 인구(만나이 기준, 명)						
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계
작성당시							
2021년(예상)							

○ 교직원 현황

기준시점	보육교직원 수(명)						계
	원장	보육교사 (1급)	보육교사 (2급)	보육교사 (3급)	취사부	기타	
작성당시							
2021년(예상)							

□ 신청지역(읍면)의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

○ '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'는 인터넷 지도서비스(카카오맵, 네이버맵 등)를 이용하여 도로상(자동차) 이동거리를 작성

(기준일자: 0000년 0월 0일)

읍면의 영유아 수		신청시설 외 지역내 보육시설 현황			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
영아 (만0~2세)	유아 (만3~5세)	시설명	시설이용 영아(만0~2세) 수	시설이용 유아(만3~5세) 수	
0명	0명	○○ 어린이집	0명	0명	0km
		○○ 유치원	0명	0명	0km
		소계	0명	0명	

□ 신청지역(읍면)과 연접한 지역의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

- 신청지역과 인접(행정경계가 맞닿아 있는)한 읍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작성
- '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'는 인터넷 지도서비스(카카오맵, 네이버맵 등)를 이용하여 도로상(자동차) 이동거리를 작성

(기준일자: 0000년 0월 0일)

읍면	읍면의 영유아 수		시설별 이용 현황			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
	영아 (만0~2세)	유아 (만3~5세)	시설명	시설이용 영아(만0~2세) 수	시설이용 유아(만3~5세) 수	
○○면	0명	0명	○○ 어린이집	0명	0명	0km
			○○ 유치원	0명	0명	0km
			소계	0명	0명	
○○면	0명	0명	○○ 어린이집	0명	0명	0km
			○○ 유치원	0명	0명	0km
			소계	0명	0명	
○○면	0명	0명	○○ 어린이집	0명	0명	0km
			○○ 유치원	0명	0명	0km
			소계	0명	0명	

2. 운영비 신청

- **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: 480만원**
- 시설당 최대 4명분(4명×10만원×12개월)을 지원하되, 보육교사, 취사부, 원장 순으로 지원
- **보육교사 교통비 : 360만원**
- 시설당 최대 3명분(3명×10만원×12개월)을 지원하되, 보육교사에게만 지원(겸임 원장은 지원제외)
- **교재·교구비 : 최대 200만원**
- **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: 최대 210만원**
- **제세공과금 : 최대 120만원**

구분	보육교직원 성명	금액(원)	계좌번호	비고
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				개인별 계좌 작성
보육교사 교통비				
교재·교구비				시설 계좌 작성
프로그램개발비				
제세공과금				
계				

3. 시설비 신청 (시설비를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)

◆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규칙 [별표 1]에 따른 “보육시설의 입지조건” 및 “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”에 적합해야 함

□ 사업 개요

소재지		유형 (√체크)	신축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보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비 <input type="checkbox"/>
부지·건물 확보 여부	○ 또는 X	부지·건물 소유주	
시설유형 (개보수시 작성)	개보수 대상시설 작성(주민센터, 복지관, 학교 등)	총면적 (㎡)	
착공 예정일	년 월 일	준공 예정일	년 월 일
시설운영 중단여부	○ 또는 X (시설공사에 따른 운영중단이 있을 경우 “O”)	시설운영 예정기간	월 ~ 월
주변 환경	교통 편리성,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, 기타 아동에게 위해 한 시설 존재 여부		
특이사항	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		

3-1. 신축 및 개보수 (신축, 개보수비를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)

□ 시설물 현황

(단위 : ㎡)

시설 용도별	합계 (A+B)	보육실 및 유희실 (A)	부대시설						
			소계(B)	사무실	양호실	조리실	목욕실	화장실	기타
면적									

□ 사업계획

- [현황 및 필요성]은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및 기대효과를 **최대한 구체적으로** 작성
- [시설비 활용계획]은 지원받은 시설비로 하고자 하는 일(화장실 개보수 등)을 구체적으로 작성
- [추진일정]은 설계, 착공 및 완공, 위탁업체 선정, 원아모집, 개원 시기 등을 작성
- 신설하는 경우,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을 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

○ 현황 및 필요성

-

○ 시설비 활용계획

-

○ 추진일정

-

□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

<시설비 지원기준>

- 3~15인 이하 보육시설 : 최대 15,200만원
 - 리모델링·신축비 : 9,000만원 내외(64.35㎡내외 지원, 1,397,000원/㎡ 적용)
 -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: 2,000만원 내외(33㎡내외 지원, 606,060원/㎡ 적용)
- 16~20인 이하 보육시설 : 15,200만원 + 30% 추가지원 가능
 - 리모델링·신축비 : 12,000만원 내외(85.8㎡내외 지원, 1,397,000원/㎡ 적용)
 -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: 2,000만원 내외(33㎡내외 지원, 606,060원/㎡ 적용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¹⁾	사업량 ²⁾	재원별 부담계획 ³⁾				비고
		계	국비	지방비	보조금외	
합 계						
1.	1)					
	2)					
2.	1)					
...						

- 1) 시설설치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(예시: 크랙공사, 화장실 소변기 교체 등)
- 2) 사업량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(예시: 크랙공사(00㎡), 화장실 소변기 교체(00개))

□ 건축제한 여부 확인

-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후 작성

○

□ 부지확보 계획 (어린이집, 숙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작성)

- 부지확보 일정 등 계획 작성, 부지확보 협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필요

○

□ 관련 사진

- 부지, 건물, 개보수할 장소 등 시설비와 관련된 사진(최소 2장이상)

사진설명	
사진설명	

3-2. 차량 (차량을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)

□ 사업계획

(단위 : m²)

기존 차량	운영여부	차종	연식	누적운행거리(km)	
	○ 또는 X				
교체 필요성					
구매 희망 차량	차종(몇인승)	구매 예정일	재원 부담계획(천원)		
			합계	보조금	자부담(있을시)
	스타렉스(11인승)				

3-3. 장비 (장비를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)

□ 사업계획

(단위 : m²)

구매 필요성					
구매 희망 장비	장비명	구매 예정일	재원 부담계획(천원)		
			합계	보조금	자부담(있을시)
	...				

□ 관련 사진

- 기존 차량 및 장비 사진 (차량 신청 시 기존차량 연식과 누적운행거리 사전 꼭 포함)

사진설명	
사진설명	

4. 운영계획 (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만 작성)

□ 이용희망 아동(사업신청 연도)

○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

연번	아동 성명	(만) 연령	특징 (다문화, 장애아, 조손가정 등)	주소 (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경우 실주소도 함께 기재)	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	신설 시설 이용 사유
1					○○유치원	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아서
2					미이용	영아이므로 주변 보육시설 이용하기 어려움
...

□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계획

<예시>

(단위: 명)

구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총계
이용 아동 수	2	4	3	4	2	1	13
보육교사 배치	1	1		1			3

□ 종사자 채용 계획

○ 보육교사 수급계획도 작성(보육교사 진입 가능성, 처우 계획 등)

총 인원	원장	보육교사	보조인력	취사부	운전사	기타

<수급계획>

○

□ 운영 예산 내역 산출

(단위: 원)

사업내용 및 규모	수입					지출
	계	국고보조	지방비부담	기타보조	보육료 수입	
0. 보육료 수입						
1. 종사자 인건비						
- 원장						
- 보육교사						
- 보조인력						
- 취사부						
- 운전사						
- 기타수당						
...						
2. 교재교구비						
3. 운영비						
- 차량운영비						
- 비품구입비						
- 급식비						
- 간식비						
...						

5. 시설대표 및 담당자 (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청인 서명 생략 가능)

□ 신청시설 대표

성 명		전화번호	
		이메일	

□ 해당 시군 담당자

부 서			
주 소			
직위(직급)		전화번호	
성 명		이메일	

위와 같이 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)

■ [별지 제2호 서식]

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청서 (20년 지원 시설용)

1. 일반현황

신청시설

시설명		대표자(원장)	
소재지		연락처	
유형 (√체크)	시설유형 : 국공립 <input type="checkbox"/> ,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/ 직접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 , 위탁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		
	신청유형 : 시설비 <input type="checkbox"/> (금액: 원) / 운영비 <input type="checkbox"/> (금액: 원)		

운영현황

○ 영유아 현황

기준시점	영유아 인구(만나이 기준, 명)						계
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
작성당시							
2021년(예상)							

○ 교직원 현황

기준시점	보육교직원 수(명)						계
	원장	보육교사 (1급)	보육교사 (2급)	보육교사 (3급)	취사부	기타	
작성당시							
2021년(예상)							

2. 운영비 신청(마지막 장의 운영비 지원기준 참고)

구 분	보육교직원 성명	금액(원)	계좌번호	비 고
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				개인별 계좌 작성
보육교사 교통비				
교재·교구비				시설 계좌 작성
프로그램개발비				
제세공과금				
계				

3. 시설비 신청 (시설비를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)

사업 개요(차량구입비만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와, 신청유형만 작성)

소재지		신청유형 (√체크)	신축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보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비 <input type="checkbox"/>
시설유형 (개보수시 작성)	개보수 대상시설 작성(주민센터, 복지관 학교 등)	총면적 (m ²)	
착공 예정일	년 월 일	준공 예정일	년 월 일
시설운영 중단여부	O (0월~0월) 또는 X (시설공사에 따른 운영중단이 있을 경우 "O" 작성 후 중단 기간 작성)		
특이사항	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		

3-1. 개보수 (신축, 개보수비를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)

시설물 현황

(단위 : m²)

시설 용도별	합계 (A+B)	보육실 및 유희실 (A)	부대시설						
			소계(B)	사무실	양호실	조리실	목욕실	화장실	기타
면적									

사업계획

- [현황 및 필요성]은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및 기대효과를 **최대한 구체적으로** 작성
- [시설비 활용계획]은 지원받은 시설비로 하고자 하는 일(화장실 개보수 등)을 구체적으로 작성
- [추진일정]은 설계, 착공 및 완공, 위탁업체 선정, 원아모집, 개원 시기 등을 작성
- 신설하는 경우,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을 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

○ 현황 및 필요성

-

○ 시설비 활용계획

-

○ 추진일정

-

□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

<시설비 지원기준>

- 3~15인 이하 보육시설 : 최대 15,200만원
 - 리모델링 : 9,000만원 내외(64.35㎡내외 지원, 1,397,000원/㎡ 적용)
 -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: 2,000만원 내외(33㎡내외 지원, 606,060원/㎡ 적용)
- 16~20인 이하 보육시설 : 15,200만원 + 30% 추가지원 가능
 - 리모델링 : 12,000만원 내외(85.8㎡내외 지원, 1,397,000원/㎡ 적용)
 -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: 2,000만원 내외(33㎡내외 지원, 606,060원/㎡ 적용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¹⁾	사업량 ²⁾	재원별 부담계획 ³⁾				비고
		계	국비	지방비	보조금외	
합 계						
1.	1)					
	2)					
2.	1)					
...						

1) 시설설치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(예시: 크랙공사, 화장실 소변기 교체 등)

2) 사업량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(예시: 크랙공사(00㎡), 화장실 소변기 교체(00개))

□ 건축제한 여부 확인

-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후 작성

○

□ 부지확보 계획 (보육교사 숙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작성)

- 부지확보 일정 등 계획 작성, 부지확보 협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필요

○

□ 관련 사진

- 부지, 건물, 개보수할 장소 등 시설비와 관련된 사진(최소 2장이상)

사진설명	
사진설명	

3-2. 차량 (차량을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)

□ 사업계획

(단위 : m²)

기존 차량	운영여부	차종	연식	누적운행거리(km)	
	○ 또는 X				
교체 필요성					
구매 희망 차량	차종(몇인승)	구매 예정일	재원 부담계획(천원)		
			합계	보조금	자부담(있을시)
	스타렉스(11인승)				

3-3. 장비 (장비를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)

□ 사업계획

(단위 : m²)

구매 필요성					
구매 희망 장비	장비명	구매 예정일	재원 부담계획(천원)		
			합계	보조금	자부담(있을시)
	...				

□ 관련 사진

- 기존 차량 및 장비 사진 (차량 신청 시 기존차량 연식과 누적운행거리 사전 꼭 포함)

사진설명	
사진설명	

4. 시설대표 및 담당자 (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청인 서명 생략 가능)

신청시설 대표

성 명		전화번호	
		이메일	

해당 시군 담당자

부 서			
주 소			
직위(직급)		전화번호	
성 명		이메일	

위와 같이 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)

2021년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계획서(신청서)

1. 추진기관

추진기관

기관명		대표자	
소재지			

사업담당자

부서명		직위(직급)	
성명		연락처	
		메일	

시군담당자

부서명		직위(직급)	
성명		연락처	
		메일	

2. 추진배경 및 목적

- 해당지역에서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추진 필요성,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

-
-
-

3. 사업추진 개요

- 사업기간 : 2021년 0월 ~ 0월
- 대상지역 : ○○도(또는 ○○시군) 내 00개 시군 00개 읍면(또는 00개 읍면)
- 지원인원 : 00명
- 사업예산 : 000백만원(국비 00백만원, 지방비 00백만원)
- 운영인력 : 00명(사업관리자 0명, 전담교사 0명 ...)
- 사업내용 : 대략적인 사업내용(상세내용은 아래에서 작성)

4. 대상지역

□ 대상지역 선정기준

- 사업을 제공할 지역(읍면)을 선정한 기준 작성(어린이집 미설치 지역, 취약가정 다수 등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

□ 대상지역 변동(20년 사업수행자만 작성)

- 2020년 사업 대상지와 2021년 사업 예정지 사이 변동사항 작성

2020년		2021년 계획		변동 사유
시군	읍면	시군	읍면	
(예시)	○○면, ○○면, ○○면	○○군	○○면 , ○○면, ○○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외 - ○○○면 : 사업수요 없어 대상 제외
				•
				•
				•
				•
				•
				•
0개 시군	0개 읍면	0개 시군	0개 읍면	

□ '21년 사업 예정 지역 현황

○ 여러 시군을 관할하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작성(시군 단위)

시군	읍면 개수	어린이집 미소재 읍면		'21년 대상지역			선정사유
		읍면수	미소재 읍면	읍면수	대상 읍면	서비스 예정 인원	
합계							
(예시)	10	1	○○면	3	○○면 ○○면 ○○면	00명 00명 0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○○면 : 어린이집 미소재 - 인근 어린이집까지 차량으로(00분, 0km) • ○○면 : 어린이집 1개소가 있으나, 지역이 넓어 가정보육 영유아 다수(00명) • ○○면 : 서비스 이용 수요 존재(00명)
...							• •
							• •

○ 1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작성(읍면 단위, 사업대상 읍면만 작성)

읍면	영유아 수(명) (만0~5세)	보육시설 소재여부 (O/X)		가정보육 영유아수 (명)	서비스 예정 인원	선정사유
		어린 이집	유치원			
합계						
(예시)	150	X	O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 미소재 - 인근 어린이집까지 차량으로(00분, 0km)
...						• •
						• •

5. 사업추진 계획표

○ 프로그램별, 단계별 추진일정표 작성

내용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○ 인력채용(예시)												
- 채용공고	●	●										
- 인력채용			●									
○ 수요조사(예시)												
- 사업홍보		●	●									
- 수요조사			●	●								
...												

6. 사업추진 세부계획

○ 프로그램별, 단계별 세부계획 작성
 ○ 사업내용과 정량적인 목표(서비스 제공 아동수, 건수 등)가 명확하게 들어나도록 작성

□ (예시) 인력채용

- 채용인원 : 0명 (○○분야 0명, ○○분야 0명)
- 자격요건 : ○○자격증 소지자
 - 결격사유 : ○○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
- 채용방법 : (1차) 서류전형, (2차) 면접전형

채용분야	채용형태	채용인원	주요업무
○○○	계약직	0명	▶ ○○○○ 홍보 ▶ ○○○○ 관리
○○○	계약직	0명	▶ ○○○○ 개발 ▶ ○○○○ 지원

□ (예시) ○○ 프로그램 운영

- 프로그램 개요 : 프로그램 내용 소개
- 프로그램 목표 : 00개 읍면의 00개 마을을 방문하여 00명에게 서비스 제공
- 프로그램 인력 : 겸임직원 0명
- 프로그램 운영 : 격주로 정해진 요일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

	월	화	수	목	금
1-3 주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
2-4 주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	○○면(0명) ○○면(0명)

○

-

○

-

○

-

7. 기대효과 및 환류계획

기대효과

○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

○

-

○

-

환류계획

○ 사업평가(만족도조사 등) 및 환류계획 작성

○

-

○

-

8. 예산집행계획

총 소요예산 : 000백만원(국비 00백만원, 지방비 00백만원)

월별집행계획

(단위:원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집행계획	5,000,000	10,000,000				
누적금액	5,000,000	15,000,000				

구분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집행계획						
누적금액						

산출명세

○ 집행항목별 작성,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편성

구분		예산액 (원)	산 출 내 역
합 계			
인건비	보수		○○○○: 000원 = 0명×000원×12개월 ○○○○: 000원 = 0명×000원×12개월
	일용임금		○
	고용부담금		○
	소 계		
사업운영비	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	○
	수용비		○
	여 비		○
	장난감 세척		○
	기자재 및 장난감 구입비		○
	홍보비		○
	차량임차		○
	보험료		○
	기타 운영비		○
	소 계		

■ [별지 제4호 서식]

○○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(또는 이동식 놀이교실) ○○지출대장(2021년)

*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, 교재·교구비, 냉·난방비 등 항목별로 별도의 지출대장을 작성·관리

집행일자	집행내용	집행액(원)	집행방법
			카드/현금
계			

※ 지출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

■ [별지 제5호 서식]

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0분기)

(00 어린이집)

'19년 추진현황

○ 계획대비 추진현황 작성

향후계획

○ 추진상 애로사항

-

○ 해소방안

-

○ 향후일정

- 준공 및 개원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

■ [별지 제6호 서식] *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[별지 3]

■ 중요재산 현황

중앙관서명					
세부사업명					
재산명					
유형					
목적(용도)					
주소	시·도 구분				
	상세주소				
면적(m ²)					
내역	수량				
	단위				
취득가액(원)		계	국고보조금	지자체부담금	자기부담금
현재가액(원)					
보조금유형					
취득일자					
처분제한기간(일자)					
소유자구분					